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4

2022. 12. 21.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2.12.2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제정으로 법과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답례품 종류, 공급비용 및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등을 명시(안 제2조부터 제5조)

○ 기금의 조성 및 사용목적, 기부금사무의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부터 제8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부터 제15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023.1.1.)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의 선정방법과 절차,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됨.

나. 입법배경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의 가속화로 2019년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50%[1]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가 예상됨.

○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도 점점 늘어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고향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내 특산품·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1) 김태환 외.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2020.05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기부법')이 제정(2021.10.19.)되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개인은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일부를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게 됨.

< 고향사랑기부제 세부내용 >

-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지방자치단체) 복리증진사업에 활용
-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3만원대 답례품(지역 내 특산품·상품권 등) 제공

○ 서울시가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2022.9)에 따르면, 기부 참여의향은 59.8%, 서울시에 기부할 의향은 9.1%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2]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나타남.

○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 기부에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기부금액이 최초 865억 원에서 2020년 7조 1,486억원으로 83배 증가하여 지방세수 증대와 재난지역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둠.[3]

---

2) 전남(12.7%), 강원(11.8%), 경북(9.4%), 서울(9.1%) 순으로 나타남.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고향사랑기부제, 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다. 주요사항 검토

(1) 입법체계

○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선정과 고향기부법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서울시 조례안과 표준조례안의 조문 구성 >

조례안		표준조례안		내용
조 항	조 제 목	조 항	조 제 목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
제3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6조	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
제7조	기금의 사용목적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	기금운용관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4조	위원의 임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	위원의 해촉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제13조	회의	제1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4조	간사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5조	수당 등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제16조	그 밖의 사항			
		제2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3조	기금의 결산	

(2) 답례품의 종류 등(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2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한 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서울 소재 중소기업 지원이나 관광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 서비스, 유가증권(이하 ‘물품 등’)으로 정하고 있음.

< 답례품의 종류 >

- ▸ 서울시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 ▸ 서울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 ▸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 또한 답례품 중 ▸서울시 육성 산업분야의 물품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서울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희망기업 제품, ▸지역 생산 농·특산품 및 공예품 등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조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고향기부법 시행령 제5조에서 답례품의 한도를 매회 기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최고한도로 정한 것임.

○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해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울시는 유관부서 수요조사(2022년 6월, 9월)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화・관광・산업・농식품 등 4개 분야에서 대상 품목을 선정할 계획임.

< 답례품 목록(안) >

분 야	상품목록
문 화	연극·뮤지컬·미술관 입장권, 문화 아카데미권
관 광	관광 pass, 남산·한강·아쿠아리움 등 관광명소 입장권, 숙박권(템플스테이, 한옥, 호텔 등), 클래스체험권 등
산 업	서울사랑 상품권, 서울 소재 중소기업 제품, 서울상징 공예품, 뷰티상품(구두·주얼리 등), 네일·헤어·운동 체험권 등
농식품	경복궁쌀, 황실배, 전통 다과·빵 등 베이커리, 밀키트, 식당 식사권 등

○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에서는 선호하는 답례품 유형으로 유가증권인 상품권(46.9%)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고, 농산품(17.9%), 문화・체험이용권(12.2%), 공산품(11.7%), 공예품(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서울지역 특성과 시민 선호에 맞는 적합한 답례품을 선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안 제4조는 서울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과 공급업체 등의 선정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지역특산품, 상품의 제작·유통, 생산·제조 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5~9명)으로 구성함.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계획(안) >

- 선정방법 : 분야별 서울시 유관부서 추천 후 전문성 등 고려
- 심의내용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답례품 관련 사항 자문 등
- 위원구성 : 총 5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답례품은 지역의 대표성, 경제활성화 기여정도, 주민 선호도, 품질균질도 등을 평가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기부금 추이에 따라 지속되거나 변경될 예정임.

< 답례품 선정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기준
대표성	대표성, 타 지자체와 차별성, 광역단체 적합성 등
목적성	경제활성화 기여정도, 기부취지 반영정도 등
수요자 적합성	주민 선호도, 가격합리성 등
품질관리	품질 균질도, 사업초기 대응용이 정도 등
종합의견	기부금 추이에 따른 적합가능성 등

○ 그러나 표준조례안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회 추천을 포함해야 함.

○ 한편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기규정(2년)을 준용하고 있어 상설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임.

○ 그러나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외에 다른 기능이 없으므로 위원회 남설을 막고 답례품 선정시마다 품목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신축적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조례안	수정의견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신설>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 (삭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차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일까지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⑥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제>

(4)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5조)

○ 안 제5조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는 답례품의 품질·안정성·공급 및 업무수행능력, 최근 3년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목적 부합성	관할구역 내 생산기반 소유 여부 공급업체의 사업계획이 답례품 공급사업에 부합
공급업체 운영역량	3년간 생산 및 공급 실적 등
마케팅 및 유통관리	판매경로 등 유통방법 등
시설 운영 및 품질 전문성	민원대응 능력, 제품 품질 등

○ 답례품은 기부지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기부자 수요를 반영한 특색있는 제품과 안정적인 공급업체가 선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

⑸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및 관리(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6조는 고향기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 있음.

○ 서울시는 조례제정 이후 2023년 1차 추경이나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금설치 조례를 제출하면서 정작 기금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재정운용의 중대한 절차적 결함으로 볼 수 있음.

○ 이로 인해 기부금이 발생하여도 기금사업의 특수한 목적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이 아닌 일반회계의 일반재원인 세외수입(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됨.

○ 안 제6조제2항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와 확인, 영수증 발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4]에 따라 서울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

4)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 경우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지침상의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업 운영의 지연과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업무대행으로 수정이 필요함.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기관(농협)과 협약을 추진 중이며 금융기관의 역할은 단순 기탁서 접수와 확인,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간위탁과는 성격이 다름.

< 수정의견 >

조례안	수정의견
제6조(기금의 조성)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기금의 사용 목적 >

-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고향기부법 시행령 제7조는 기금을 기존 사업의 재원으로 중복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함.

○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부희망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차별화된 홍보 방안이 요구됨.[5)]

(6)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15조)

○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함.

○ 위원회는 기금 조성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9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됨.

---

5) 고향기부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모금 강요와 지역 간 답례품 과열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화·서신(문자, SNS),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는 금지(제7조제1항)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인 방송, 인쇄물, 옥외광고, 인터넷, 해외매체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내용 >

- 위원자격 : 고향사랑 기부금 또는 기금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심의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 위원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임시회의 수시 개최
- 위원임기 :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간사·수당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함.

○ 다만, 표준조례안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이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의견 >

조례안	수정의견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종합의견

○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6]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시는 고향기부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공동체와 지방재정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기금운용성과를 바탕으로 기부금과 주민 복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6) 정부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1.1. 시행)에 따라 보육·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계획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탁을 대행으로 변경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그밖에 오기사항 등을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답례품 선정시마다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수정함(안 제4조제5항).

○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탁업무가 민간위탁 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위탁’ 용어를 ‘대행’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2항).

○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4조제2

항제5호, 안 제10조제4항제3호).

○ 부칙 안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오기사항을 수정함.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24호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21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탁을 대행으로 변경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그밖에 오기사항 등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답례품 선정시마다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수정함(안 제4조제5항).

○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탁업무가 민간위탁 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위탁’ 용어를 ‘대행’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2항).

○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제5호, 안 제10조제4항제3호).

○ 부칙 안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오기사항을 수정함.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차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일까지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부칙 안 제2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는 제3조로 하고 안 제3조는 삭제한다.

부칙 안 제2조제1호 중 “제2조”를 “제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① (제정안과 같음)
1.~3.(생 략)	1.~3.(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신설>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차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일까지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조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제정안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부칙
제1조(생 략)	제1조(제정안과 같음)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제2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삭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시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서울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서울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여성기업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희망기업 제품

4. 서울시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차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일까지로 한다.

⑥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조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맡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담당사무관

이 맡는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